

의안번호	2206571
의 퇴 인	전용기의원
회 답 일	2025. 1. 21.
추계번호	24C6411

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국외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,000만원(연평균 1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국외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(안 제6조)	90	-	-	-	-	90	1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기본계획의 수립 등(제6조)	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5년마다 국외문화유산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2	국외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(안 제11조)	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현황, 보존·관리 실태, 출처 등에 관하여 조사·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3	국외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(안 제13조)	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·관리하고, 국민이 국외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(안 제14조)	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에 따른 상호 협력과 국제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국외문화유산에 조사·연구 기능 등을 수행하는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국외문화유산의 보존(안 제15조)	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6	국외문화유산의 홍보·선양(안 제16조)	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홍보·선양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환수 성과 등을 전시하고 홍보·교육하기 위하여 전시관이나 홍보관, 역사관 등을 설치할 수 있음(제3항)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홍보·선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 및 재외한인단체의 활동을 지원·육성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7	국외문화유산의 교육(안 제17조)	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국외문화유산의 환수(안 제18조)	국가유산청장은 환수된 문화유산이 국내에서 보존·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9	국제협력 및 협정 체결 등 (안 제19조)	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인력의 국제교류 또는 공동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국외문화유산 보존·활용 및 환수 활동의 지원(안 제20조)	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·육성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(안 제21조)	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「국가유산보호기금법」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기본계획의 수립 등(제6조)	○	
2	국외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(안 제11조)	×	- 실시 중
3	국외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(안 제13조)	×	- 실시 중
4	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(안 제14조)	×	- 실시 중
5	국외문화유산의 보존(안 제15조)	×	- 실시 중
6	국외문화유산의 홍보·선양(안 제16조)	×	- 실시 중
7	국외문화유산의 교육(안 제17조)	×	- 실시 중
8	국외문화유산의 환수(안 제18조)	×	- 실시 중
9	국제협력 및 협정 체결 등(안 제19조)	×	- 실시 중
10	국외문화유산 보존·활용 및 환수 활동의 지원(안 제20조)	×	- 실시 중
11	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(안 제21조)	×	- 실시 중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국외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(안 제11조), 국외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(안 제13조),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(안 제14조), 국외문화유산의 보존(안 제15조), 국외문화유산의 홍보·선양(안 제16조), 국외문화유산의 교육(안 제17조), 국외문화유산의 환수(안 제18조), 국제협력 및 협정 체결 등(안 제19조), 국외문화유산 보존·활용 및 환수 활동의 지원(안 제20조),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(안 제21조)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관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재정수반요인	현행 사업(2024년 기준)
국외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 (안 제11조)	「문화유산법」 제68조(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) -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(8.2억원) - 유동조사 (71백만원)
국외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(안 제13조)	「문화유산법」 제69조의3(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) 제6항 - 국외문화재DB 및 대국민서비스 체계 구축(1.4억원)
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(안 제14조)	「문화유산법」 제69조의3(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) 제6항 - 국외문화유산협력회 개최(18백만원)
국외문화유산의 보존 (안 제15조)	「문화유산법」 제69조(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) - 국외문화유산 보존·복원 사업(3.1억원)
국외문화유산의 홍보·선양 (안 제16조)	「문화유산법」 제69조의3(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) 제6항 - 국외문화유산 활용 사업(7억원)
국외문화유산의 교육 (안 제17조)	「문화유산법」 제69조의3(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) 제6항 - 교육용 콘텐츠 제작(20백만원)
국외문화유산의 환수 (안 제18조)	「문화유산법」 제69조(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) - 국외문화유산 환수(1.5억원)
국제협력 및 협정 체결 등 (안 제19조)	「문화유산법」 제69조의3(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) 제6항 - 외국기관 및 외국 연구자 학술 지원(2억원)
국외문화유산 보존·활용 및 환수 활동의 지원(안 제20조)	「문화유산법」 제69조(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) - 국외문화유산 민간 협력 및 지원(2억원)
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(안 제21조)	「문화유산법」 제69조의3(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) -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조사 및 환수·활용(56.2억원) -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 및 운영(11.7억) - K-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(16억)

자료: 국가유산청
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정안에 따라 국외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5년마다 국외문화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
- 국가유산청장은 「문화유산법」 제6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2025년도에 9,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

[표 3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기본계획의 수립 등 (제6조)	90	-	-	-	-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